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업셋별 의원 발의]

의안번호	2221
------	------

발의일자 : 2022. 9. 6.
발 의 자 : 업셋별 의원
찬 성 자 : 이인식, 도병두
고성미 의원

1. 제안이유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인권전담부서의 지정, 인권지수 연구·개발 및 인권영향평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권전담부서 설치 또는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항 신설).
- 나. 인권보장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인권지수 연구·개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 다. 인권침해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청장의 인권영향평가 실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8조).
- 라. 상위법과 같은 용어 수정 등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2022. 9. 7. ~ 2022. 9. 14.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호”를 “보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인권지수 연구·개발)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인권보장의 수준을 나타내는 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18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2. 인권보호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u>보호</u>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p> <p>2. 3. (생략)</p> <p>제10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u><신 설></u></p> <p><u>① · ②</u>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 -----.</p> <p>1. ----- <u>보장</u>----- ----- ----- -----.</p> <p>2. 3.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u>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u>② · ③</u>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p> <p><u>제10조의2(인권지수 연구·개발)</u> <u>구청장은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인권보장의 수준을 나타내는 구 인권지수를 연구·개</u></p>

제18조(인권영향평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발할 수 있다.

제18조(인권영향평가) -----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2. 인권보호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
려는 경우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시행 2019. 12. 31.]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69호, 2019. 12. 3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호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주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등”이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의무)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폭넓은 주민의 참여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인권 기반의 행정조직과 인권 정책 추진 체계 구축
 2. 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인권 교육
 3. 주민에 대한 인권 교육
 4.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의 적극 발굴
- ②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인권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불이행의 경우,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

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참여) ① 주민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인권은 제2조에서 포함하지 않은 경우라도 포괄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주민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구의 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 정책 기본 이념
2. 분야별 인권 정책 과제, 추진 목표 및 실행 계획
3.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그 밖의 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권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그 추진 사항을 평가하여 제11조의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정책회의)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정책회의(이하 “인권정책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정책회의는 부구청장이 주관하며 관계 부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석한다.

③ 인권정책회의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기타 중요한 인권 정책과 관련하여 통일적인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8조(인권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 및 구청장이 지도·감독하는 법인 및 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등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권 교육 강좌를 연 1회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지역의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인권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인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교육의 시행 목적과 취지에 부합 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개선 및 효과 증진을 위해 그 결과를 향후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센터는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③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

2. 소속공무원등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홍보

3. 인권 증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의 방법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5.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가. 소속공무원등이나 구청장이 지도·감독하는 복지시설의 업무수행 또는 구가 추진하는 사업(정책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그 밖에 구청장이나 제11조에 따른 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8.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사항

9. 인권정책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인권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매년 수탁기관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공개

하여야 하며, 위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대한 자문
4. 인권 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 표명
5. 주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6.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7.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 교육에 관한 자문
8. 제1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자문
9. 그 밖에 구청장이나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10.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여 인권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원 1명
2.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3. 법률, 노무, 교육 관련 활동가 또는 인권 분야와 관련된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4. 인권 교육 과정을 1회 이상 수료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갖고 공개 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주민 8명 이내

5.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을 새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 팀장 또는 제9조제5항의 센터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

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에 대한 권고사항이 의결 사항일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및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인권영향평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제1069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